

대구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1199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창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성옥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1)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구 동구 D건물, E호]과 피고 사이의 2019. 4. 12.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2)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F은 2016. 5. 9. C에게 1,100만 원을 이자율 연 18.8%, 지연배상금을 적용이자율 + 3%, 상환기간 48개월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G 주식회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9. 12. 23.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이 C에게 통지되었다.

(2) 원고는 2020. 11. 30. 서울동부 2020가소499781호로 C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3. 18. “C은 원고에게 17,479,901원 및 그 중 9,510,396원에 대하여 2020.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1. 4.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처분행위

(1) C은 H와 피고 사이의 자녀이고, H(2019. 4. 6. 사망)의 상속인으로 피고(3/5지분)와 H(2/5지분)가 있다.

(2) 망인은 2007. 7.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거래가액 75,700,000원)를 마쳤고, 그 이후로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출공 거주하여 왔다.

(3) 망 H의 상속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는데, C은 2019. 4.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C은 이를 상속받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4) 피고는 2019. 9.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상속지분인 2/5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망인의 재산 상태와 피고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다. 피고는 C의 채무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전부터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라고 하는 이른바 '사해의사'라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수익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정된다. 그리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이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다면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9982 판결 등 참조),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 및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C이 적극재산으로 경산시 I 외 6필지 지상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경산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든 증거에다가 갑10,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무렵 C의 채무로는, 원고의 채권 이외에도 L조합에 대한 80,209,068원 채무, M 주식회사에 대한 37,901,383원 채무, 주식회사 N에 대한 11,657,479원 채무 등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L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전부 포기함으로써 일응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에서 증거에다가 을6호증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은 피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서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수익자 명의로 이전하는 일반적인 사해행위와 달리,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귀속을 확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은 신분상의 행위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으므로, 사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을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② 피고는 목수였던 망인과 1977. 3. 26. 혼인한 이후 40년 이상 자녀양육 등 가사를 담당하면서 경제활동 또한 상당기간 동안 지속함으로써 가정경제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망인과 혼인생활 30년 차에 망인이 아픈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이 비록 망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망인과 피고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부동산 매입 당시 자녀인 C이 기여한 내역은 없다. 오히려 갑6호증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생전에 자녀인 C에게 최소 30,8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이 사건 부동산 중 망인의 몫을 이 사건 부동산 시가 8,000만 원(을7호증)의 1/2에 해당하는 4,000만 원으로 하고, 위 ③항의 돈을 증여한 돈이라 볼 경우 망인의 간주상속재산은 70,800,000원(= 40,000,000원 + 30,800,000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C의 법정상속분은 28,320,000원(= 70,800,000원 × 2/5)이 된다. 결국 C의 수증액(30,800,000원)이 법정상속분(28,320,000원)을 초과하여 C의 구체적 상속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의 결과가 C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⑤ 부부 중 일방이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협의를 통하여 남은 일방에게 부부가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하던 집을 단독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통념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일생동안 가족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것에 대한 기여·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의 복합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이러한 재산이전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거나 그 배우자를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유지, 가족에 대한 헌신 등에 대한 보상, 노모의 남은 여생 동안의 거주 보장 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정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동구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공동주택
1층 내지 4층 각 다세대주택(2) 164.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동구 대 464.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구조 75.71㎡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506분의 55.846 끝.

